

심 판 청 구 서

청구인	이 ○ ○ (주민등록번호 :	_)	
	등록기준지 및 주소 : 〇〇시	00구	ㅇㅇ길 ㅇ(
	(우편번호 : -)			
상대방	정 △ △ (주민등록번호 :	_)	
	등록기준지 : ㅇㅇ시 ㅇㅇ구 ㅇ) 이길 (00	
	주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	ㅇㅇ(우	편번호 :	-)
사건본인	1. 이 ◎ ◎ (주민등록번호:	_)	
	2. 이 ◉ ◉ (주민등록번호:	_)	
	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및	주소 :	청구인과	같음

친권행사자 지정청구

청 구 취 지

- 1.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.
- 2.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청구인과 상대방은 19○○. ○. ○.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나, 19○○. ○. ○.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. {갑 제 1 호증의 1,2 (각 혼인관계증명서)}
- 2.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출을 반복하여 청구인이

술집 등지에서 상대방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곤 하였으나 결국 19〇〇. 〇. 7 월 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청구인은 〇〇가정법원 〇〇 드 〇〇〇호로 이론 오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. {갑 제2 호증 (판결)} 그리고 사건 본인은 청구인의 가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의도움을 받아 양육해 왔고, 상대방과는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.

- 3.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이혼 소송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어야만 했으나, 법을 잘 몰라 그러한 청구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친권 행사자 지정에 관한 판결을 받지 못했고,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친권 행사자에 관한 협의를 할 수도 없어 친권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.
- 4. 그러던 중 20○○. ○. ○. 사건본인 이●●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바람에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- 5. 따라서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받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 1 호증의 1,2 각 혼인관계증명서

1. 갑 제 2 호증 판결

1. 갑 제 3 호증의 1,2 가족관계증명서(사건본인)

1. 갑 제 4 호증의 1,2 각 주민등록등본

1. 갑 제 5 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

첨 부 서 류

1. 소장 부본 1통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납부서 1통

20 ○ ○ 년 ○ 월 ○ 일 위 청구인 이 ○ ○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	Tr. kr. com and an	구조공단
제출법원	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(가사소송법 제46조)	
신 청 인	·부부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 법 규	
비용	・인지액: 사건본인 1인을 기준으로 친권자(10,000원) 및 양육자(10,000원) 지정(변경)시 수입인지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당자사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12회분	